

● 재산관리규정(0504)

제정 1998. 1. 1. 규정 제 22호
 개정 1999. 2. 24. 규정 제 53호
 개정 1999. 10. 4. 규정 제 71호
 개정 2004. 8. 6. 규정 제155호
 개정 2005. 5. 19. 규정 제180호
 개정 2007. 1. 29. 규정 제226호
 개정 2007. 3. 28. 규정 제240호
 개정 2008. 1. 16. 규정 제279호
 개정 2009. 2. 23. 규정 제308호
 개정 2012. 3. 30. 규정 제388호
 개정 2014. 12. 2. 규정 제459호
 개정 2015. 10. 20. 규정 제471호
 개정 2015. 10. 20. 규정 제471호
 개정 2021. 6. 30. 규정 제624호
 개정 2023. 9. 20. 규정 제69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과 경기주택도시공사설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 의거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의 재산관리업무에 관한 주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다른 사규에 정한 경우 해당 법령 및 다른 사규에 따라 관리하고 그 외 재산관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4.12.2>

제3조(재산의 범위) 이 규정에서 재산이라 함은 공사의 부담이나 기증, 출자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중물
2. 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3. 지상권, 지역권, 광역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4.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5.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 지방채증권, 국채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6. 임대권 <개정 15.10.20>

7.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산의 구분) 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용 재산, 사업용 재산, 비업무용 재산으로 구분한다.

1. 업무용 재산 : 공사가 직접 업무에 사용 또는 사용할하기로 결정한 것
2. 사업용 재산 : 공사가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할하기로 결정한 것
3. 비업무용 재산 :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모든 재산

제5조(재산심의회)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산심의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관 리

제6조(재산의 총괄 및 관리자 지정) ① 공사재산에 관한 사무는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하 “재산관리담당” 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99.10.4, 05.5.19, 07.1.29, 07.3.28, 08.1.16 09.2.23>

② 공사재산에 관한 관리담당(이하 “분임재산관리담

당”이라 한다)은 재산 총괄관리 부서장으로 하며, 재산은 다음 각호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관리자”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99.10.4, 04.8.6 09.2.23, 14.12.2, 23.9.20>

1. 업무용 재산 : 업무용 재산관련 담당 부서장
2. 사업용 재산 : 사업용 재산관련 담당 부서장
3. 비업무용 재산 :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해당 재산 관련 담당 부서장

③ <삭제 23.9.20>

④ <삭제 14.12.2>

⑤ 관리자는 그 관리하는 모든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산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관리담당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개정 14.12.2>

⑥ 관리자는 무단점용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그 내용을 재산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4.12.2>

⑦ 재산관리담당은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⑧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재산취득을 통보받은 분임재산관리담당은 지체없이 관리부서를 지정·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재산취득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자는 분임재산관리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3.9.20>

제7조(재산관리담당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재산관리담당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사장의 승인을 얻어 관리자를 지정한다. 단, 사업용재산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보직부여시 관리자로 지정되며 부여받은 직위를 상실함으로써 관리자의 지정은 해지된다. <개정 14.12.2, 23.9.20>

② 재산관리담당은 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담당은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 지정하게(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8조(관리책임) ① 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소관재산을 공사의 명으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담당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④ 관리자는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의 안전관리책임은 당해 시설의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진다.

⑥ 화재예방 등의 일반적 책임은 방화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진다. 다만, 관리업무와 관계없는 사유 또는 관리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타인의 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은 화재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가 진다.

제9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시키고자 하는 직원의 작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경계표부착) 공사소유토지의 경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개소에 영구적인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거주용 사용제한) 공사소유건물에 직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산의 관리 또는 단속에 필요한 관리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임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리전환 승인신청) 관리자가 다른 관리자 소관의 재산을 관리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 10. 4, 05.5.19, 14.12.2>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5. 도시계획확인원
6.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현 관리자의 의견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8. 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재해보고 등) ① 관리자는 화재 등 사고로 말미암아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취득 및 처분

제14조(기부) ① 공사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동 재산을 관리할 부서와 협의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10.4, 05.5.19, 14.12.2>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3. 기부의 목적
4. 기부조건
5. 재산의 현황
6. 토지계획확인원
7.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그 도면 등
8. 등기부등본
9. 사용계획
10. 제6호 내지 제8호의 서류는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산의 기부는 재산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별도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기부재산의 사용 허용) ① 기부된 재산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이를 무상으로 그 기부인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 승계인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상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대여대상 재산가액 × 임대료율 = 연간임대료

·기부재산가액 ÷ 연간임대료 = 무상사용기간

다만, 연간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기부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일 경우 그 부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사용 허용 재산가액으로 본다.

제16조(등기절차)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자산의 관리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등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재산관리담당에게 재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등기일자, 등기번호 포함)
2. 재산의 용도
3. 재산의 취득 근거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5. 도시계획확인원
6. 기타 필요한 사항
7. 제4호, 제5호의 서류는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재신취득) ① 재산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관리자는 재산관리담당과 협의를 거쳐 사장의 방침을 받아 이를 취득한다.

② 최초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자는 이를 등기절차와 관계없이 분임재산관리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3.9.20>

제18조(관리처분)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을 관리자에게 위임하여 관리처분케 할 수 있다.

제19조(신축 등 보고) 재산을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철거, 이축, 구조변경 처분하였을 때에는 관리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장(참조 : 재산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등기일자, 등기번호 포함)
2. 재산의 용도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도시계획확인원
5. 기타 필요한 사항
6. 제3호 제4호의 서류는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소유권이전 제한) 재산을 유상으로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경우에는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임대받은 재산을 매수할 때에는 그 임대료도 완납하여야 한다.

제21조(교환) ① 공사에서 직접 업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공사는 그 소유의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소유의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한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갖추어 방침을 받은 후 교환하여야 한다.(교환계약서 : 별지 제7호 서식)

1. 교환 쌍방 물건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 쌍방 물건의 가액
3. 교환 상대방의 주소성명
4. 교환 목적 및 사유
5. 교환 쌍방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6. 교환 쌍방 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7. 교환 쌍방 재산의 등기부등본
8. 인감증명서
9. 교환승낙서

10. 기타 필요한 사항

11. 제5호 내지 제7호의 서류는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의 가격이라 함은 감정가격을 뜻한다.

제22조(교환차액의 납기)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상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23조(가격평정) ① 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매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조서 인근 유사물건에 대한 매매실례,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토지임대의 경우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조서를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2.3.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산가격의 유효기간은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재산가격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대부 및 매각

제24조(대부료 및 사용요율) ① 재산의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정한다.

1. 당해 재산의 평정가격의 5.0%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4.0%이상으로 한다.
 - 가.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 나. 사옥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3.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2.5%이상으로 한다.
 - 가. 공용·공공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나.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이상으로 한다.
- ② 단, 사옥의 대부료 및 사용요율 등 임대에 관한 사항은 사옥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의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건물의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단층건물 : 1층은 부지평가액의 전부 지하실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나. 2층건물 :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지하실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 이상 건물 : 1, 2층은 부지평가액의 각각 2분의 1 3층 이상 및 지하실은 부지평가액의 각각 3분의 1

<본조신설 21.6.30.>

제25조(재산의 무상사용) ① 사장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1.6.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사회복지단체(정부 관련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에 한한다)가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사에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위탁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경우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7.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 ② 사장은 제1항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사용을 중단하게 하거나 유상사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신설 21.6.30.>

제26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사장은 소관재산을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인근지 임대실투자서(또는 무상으로 하는 사유)
 3. 사용 차주 또는 임차인의 주소, 성명
 4.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
 6. 도면
 7. 기타 필요한 증명(토지건축물관리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 ②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제1항의 사항을 익월10일까지 사장(참조 : 재산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조건)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 곤란한 재산을 그 연고자에게 대부하고자 할 때
3. 법령에 의하여 연고자에게 대부하고자 할 때
4. 사옥의 구내재산을 사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
5. 기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사에 특별히 유리하다고 사장이 인정 한 때

제28조(대부료납기) ① 재산의 대부료는 당해년분을 다

음 각 호의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②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대부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매각조건) ① 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예정가격 1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매각할 때
 3. 건축법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4.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5.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6.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재산의 매각시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매각재산 대금납부) ① 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자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매각재산 대금이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6개월까지,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1년까지 이행연기 특약일 현재의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행연기 특약일 현재의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금을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에는 해지조치할 수 있다.

제31조(대부로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로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금융기관(일반시중은행에 한한다)의 여·수신금리 중 여신에 관한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① 관리자는 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3.9.20>

② 관리자는 제1항의 내용을 분임재산관리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3.9.20>

제33조(대장 및 사용도면의 제조) ① 관리자는 재산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다른 사규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4.12.2, 23.9.20>

② 관리자는 소관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대장과 도면을 비치하고 재산이동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다른 사규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4.12.2>

③ 재산관리담당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정서식을 변경 또는 추가 제정할 수 있으며 각 재산관리자는 필요시 지정된 장부와 대장 외에 별도의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재산과 관련된 별도 전산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등록으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신설 23.9.20>

제34조(재산증감통지 및 현재액 보고) ① 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리자는 지체없이 대장을 정비하고, 분임재산담당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다른 사규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4.12.2, 23.9.20>

② 관리자는 소관 재산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재산증감이동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산관리담당을 거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다른 사규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4.12.2>

제35조(임대차재산) 임대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

는 임대차재산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3.9.20>

② 관리자는 제1항의 내용을 분임재산관리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3.9.20>

제 5 장 보 칙

제36조(중요재산 취득관리처분) 정관 제41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부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5.10.20>

1. 재산의 취득 :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재산 취득시 재산가액 20억원 이상의 재산 <개정 15.10.20>
2. 재산의 처분 : 사업용 재산 및 비업무용 재산은 장부가액 20억원 이상 <개정 15.10.20>
3. 별도의 사업계획 등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관련법 등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물품관리규정 및 회계규정 중 자산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98. 1. 1>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2.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0. 4>

이 규정은 199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8.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5.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1.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3.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1.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2.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3.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3. 30>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10. 20>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1. 6. 30>

이 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3. 9. 20>

이 규정은 202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23조 관련)】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별지 제1-1호 서식】

매 매 실 레 조 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임대가격 또는 기준수확량		매 매 가 격		매 매 년월일	매수자	매도자
				총 액	단 가	총 액	단 가			
			m ²							

년 월 일

소속부서명

조사자

직

성명

(인)

- (주) 1. 매매실례는 가급적 매각재산의 부근에 소재한 유사재산을 조사한다.
2. 매매실례는 가급적 최근 실례를 조사한다.

【별지 제2호 서식(제32조 관련)】

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소 재 지			시 구 동 가 번지							
물 건 표 지	토 지	코드 번호	건 물	번호	기 타	명칭	부속사항			
		지목		종목		구조				
				용도		형식				
				면적		전체 m ²		수량		
						대부·사용 m ²				
적 요										
허가 번호	사용 목적	계약 (갱신)년월일 허가	기 간	대부 사용료 액	대부·사용료징수		사 용 자			
					금 액	징 수 년월일	주 소	성 명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제34조 관련)】 <개정 14.12.2>

재 산 증·감 이 동 보 고 서

번호	소재지	명칭	증		감		증감이동 년월일	증감사항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위 보고함

년 월 일

관리자(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제35조 관련)】

임 대 차 재 산 대 장

[illegible]

【별지 제5호 서식(제33조 관련)】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

Code No :

제 조 자		확 인	
-------------	--	--------	--

관리자 :	구 분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지적	취득시 : m ²	용 도	연 혁	현황 및 상태	유지관리비 추가상황		
	현재 : m ²				년 도	내 용	금 액
토지 공급							
농지 공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							수익 상황	권리취득 상 황		권리변동 상 황	
년 월일	지목	면적	거래 시가	임대 가격	시가 표준액	조사가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취득 원인		상 대 방	
								취득 금액		변동사항	
								전 소유자		관리부서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 번호			
								등기 목적			
										비 고	

자 산 재 평 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 록	대 조	비 고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증감 사유	증감 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년월일	차수자 주 소	성 명	대 부 내 용	대 부 목 적	계 약 년월일	대 부 기 간	대부료	기 록	대 조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제33조 관련)】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

Code No :

제 조 자		확 인	
-------------	--	--------	--

관리자 :	구 분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소재지 :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건물관리대장등본	
							배치도	
					세 분 류			

지적		취득시 :			용 도	연 혁	현황 및 상태	유지관리비 추가상황		
		㎡						년 도	내 용	금 액
		현재 :								
			㎡							
건축년월일		년 월 일								
건축 가격		원								
구	구성재료									
	지급종류									
조	종 수		단							
			면적							

차 지 상 황		권 리 취 득 상 황		권 리 변 동 상 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득 원인		상 대 방			
차지년월일		취득 금액		변동상황			
차지 기간		전 소유자		관리부서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 번호					
		등기 목적					

자 산 재 평 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 록	대 조	비 고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증감 사유	증감 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년월일	차수자 주 소	성 명	대 부 내 용	대 부 목 적	계 약 년월일	대 부 기 간	대부료	기 록	대 조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제33조 관련)】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

Code No :

제 조 자		확 인 인	
-------------	--	-------------	--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배 치 도	
		세분류					평 면 도	

명칭	구조형식	수 량	용 도	연 혁	현황 및 상태	유지관리비 추가상황		
						년 도	내 용	금 액

차 지 상 황		권 리 취 득 상 황		권 리 변 동 상 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득 원인		상 대 방			
차지년월일		취득 금액		변동상황			
차지 기간		전 소유자		관리부서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 번호					
		등기 목적					

자 산 재 평 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 록	대 조	비 고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증감 사유	증감 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년월일	차수자 주 소	성 명	대 부 내 용	대 부 목 적	계 약 년월일	대 부 기 간	대부료	기 록	대 조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제33조 관련)】

재 산 관 리 대 장

(임 목 축)

Code No :		제 조 자			확 인		
-----------	--	-------------	--	--	--------	--	--

관리자 :	구 분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소제지 :					

수		종	용 도	연 혁	현황 및 상태	관리비 투자상황
본 수		(본)				
		주				
식 재 상 황	년월일					
	본 수					
	면 적	㎡				
	식재자					

차 지 상 황		권 리 취 득 상 황		권 리 변 동 상 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득 원인		상 대 방			
차지년월일		취득 금액		변동상황			
차지 기간		전 소유자		관리부서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 번호					
		등기 목적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증감 사유	증감 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년월일	목적			

자 산 재 평 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 록	대 조	비 고

재 산 관 리 대 장

(기 계 기 구)

Code No :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px; text-align: center;">제 조 자</td> <td style="width: 40px;"></td> <td style="width: 20px; text-align: center;">확 인</td> <td style="width: 40px;"></td> </tr> </table>				제 조 자		확 인	
제 조 자		확 인									
관리자		대 분 류		형		용 도					
		중 분 류									
소재지		제조년월일		규격용량		연 혁					
		제 조 자									
명 칭		제조 번호		구입금액							

이 동 년월일	증감 사유	증액		감액		현재액		비고	기재년월일	인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조년월일	인

자 산 재 평 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 록	대 조	비 고

<신설 23.9.20>

Code No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회계명 :

명칭 :

작성 자		확 인								
재산 관리관		취 득	연월일	방법	금액	소유자	부 속 서 류			연 혁
종목										
등록 번호										
증감 이동 상황	연월 일	문서 대호	증감 사유	증가		감소		현재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자산 재평가	연월 일	재평 가액	재평가 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 고	
대부 및 사용 상황	연월 일	주소	성명	내용	대부 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비고										

<신설 23.9.20>

Code No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회계명 :

작성 자		확 인	
---------	--	--------	--

주식 등 종류						법 인	명칭			
1주당 액면금액				총지분 금액			주소			
보관기관				재산 관리관			사업내용			
출 자 연 혁	연월일	금액		변동 사유			자본금			
							설립연월일			
연 월 일	증감사유	증가		감소		현재		비고 (출자 재원등)	기록	대조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별지 제6호 서식(제26조 관련)】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공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장 귀 하

【별지 제6-1호 서식(제26조 관련)】

재 산 ☐ 유 상 ☐ 사용허가서
무 상 ☐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 유 상 ☐ 사용허가
무 상 ☐
신청에 대하여 별첨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장 인

【별지 제6-2호 서식(제26조 관련)】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공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재산관리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요금은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공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공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기타 본 공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공사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공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공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6-3호 서식(제26조 관련) <개정 21.6.30.】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받은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제3조 대부료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후 년 월 일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갑”으로부터 매수요금을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 ②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이 제1호의 사유로 그 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 제2항 단서의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며,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1. 대부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에 필요한 경비
2. 대부계약 해지에 따라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제10조 ①본 계약기간 중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약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별지 제7호 서식(제21조 관련)】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재산

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교환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
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본 계약
체결 즉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 (갑) (인)

성 명 (을) (인)

【별지 제8호 서식(제29조 관련)】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거주(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호 항에 의거하여 매
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분 납 금	이 자	납부기일	회수	분 납 금	이 자	납부기일
1				4			
2				5			
3				6			

“을”은 대금납부 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
야 하며 매수 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
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 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이를 반환한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미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
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을”은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의 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기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는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위 매수자(을)
주소 · 성명